육상 · 해상 교통 혁신

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

관리번호 2-4-1	중앙정부 도움필요성: 해당없음 ○ 도움필요(제도○ 재정● 권한○) 특별시 도움필요성: 해당없음 ○ 도움필요(제도○ 재정● 권한○)						
신규여부	신 규 ○ 계 속 ●	총사업비 (백만원)	총계	국비	시비	군비	기타
완료시기	임기내 ● 임기후 ○		9,212	969.5	226.2	8,016.3	-
사업기간	2026 ~ 2030	추진상황	추진 중(20%)				
사업주체	신안군 교통지원과	공약담당	육상교통팀장 김기봉 ☎ 240-8166 주무관 최민국 ☎ 240-8168 교통행정팀장 오정경 ☎ 240-8156 주무관 양용현 ☎ 240-8858				

◎ 현황 및 정책 목표

· [현 황]

(1) 교통약자 대상 택시 요금 지원 사업 추진 중

(2) 특별교통수단(장애인콜택시) 운영: 7대, 인력 7명(운전6, 사무1)/ 민간위탁

*법정대수: 9대(보행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명당 1대)

· [정책 목표]

(1) 택시 요금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한 교통 소외 어르신 이동권 확대 및 이용 편의성 증대

(2)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확보 및 권역별 거점 설치

◎ 사업개요

(1) 교통약자 대상 택시 요금 지원 확대

· 사업위치: 신안군 관내 전역

· 사업기간: 2027 ~ 2030

· 사 업 비: 연 2,100백만원(국 160, 시 48, 군 1,892) ***농식품부/농촌형교통모델**

※ 산출내역

- (미운행마을) 446명×월 80,000원×12개월×0.7(이용률)= 300백만원
- (80세고령자) 4,242명×월 50,000원×12개월×0.7(이용률)= 1,800백만원

· 사업규모

지 원 기 준	대상 인원	지원금액		비고
		26년 기준	변경안	
공영버스 미운행지역 거주 교통약자 (65세 이상 고령자 등)	446	**월 30,000원**	**월 80,000원**	**대상 인원 전과 동일**
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 (80세 이상 고령자, 중증장애인 등)	4,242	**월 20,000원**	**월 50,000원**	

· 시행기관: 신안군

(2) 특별교통수단(장애인콜택시) 법정대수 100% 확보

· 사업위치: 신안군 전역

· 사업기간: 2027 ~ 2030

· 사 업 비: 812백만원(국 329.5, 시 34.2, 군 448.3)

- 차량구입(3대): 180백만원 (국 85.5, 시 34.2, 군 60.3)
- 운영비(2대) : 32백만원 (국 16, 군 16)/ 연간
- 운전원인건비(3명): 126백만원(국 45, 군 81)/ 연간

* 예산확보 방안: 국토교통부/ 시비 (차량구입 70%, 운영비 50%)

· 사업규모: 차량 3대(신규 2, 대폐차 1) 구입, 운전원 3명 증원

- 차량대수 총 7대 ⇒ 9대, 운전원 총 6명 ⇒ 9명

· 시행기관: 신안군

◎ 사전절차 이행 여부

부지매입	투자심사	사전평가	기본계획	국가계획반영 (중기재정계획 등)	연계사업 여 부
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2026. 11.예정	X

◎ 연도별 이행계획

(1) 교통약자 대상 택시 요금 지원 확대

연도	이 행 계 획		사업달성 확인(핵심)지표	추진율
2026	3/4	· 본예산 확보 건의	가. 예산확보 50% 나. 세부계획 50%	20
	4/4	· 추진 세부계획 수립		
2027	1/4	· ‘27년 사업 추진 및 정산(계속)	사업 실시 여부	100
	2/4			
	3/4			
	4/4			
2028	1/4	· ‘28년 사업 추진 및 정산(계속)	사업 실시 여부	100
	2/4			
	3/4			
	4/4			
2029	1/4	· ‘29년 사업 추진 및 정산(계속)	사업 실시 여부	100
	2/4			
	3/4			
	4/4			
2030	1/4	· ‘30년 사업 추진 및 정산(계속)	사업 실시 여부	100
	2/4			
2030 이후~	3/4		사업 실시 여부	100
	4/4			

(2) 특별교통수단(장애인콜택시) 법정대수 100% 확보

연도	이 행 계 획		사업달성 확인(핵심)지표	추진율
2026	4/4	계획 수립	-	0
2027	1/4	신규차량 구입 의뢰, 운전원 증원	신규차 구입	100
	2/4	이용현황 자체 점검		
	3/4	신규차량 인수 및 운행 개시 준비		
	4/4	신규차량 운행 개시		
2028	1/4	대폐차량 구입 의뢰	대폐차 구입	100
	2/4	이용현황 자체 점검		
	3/4	대폐차량 인수 및 운행 개시 준비		
	4/4	대폐차량 운행 개시		
2029	1/4	이용실태 및 문제점 파악, 개선사항 도출	-	-
	2/4			
	3/4			
	4/4			

◎ 주요세부일정

(1) 교통약자 대상 택시 요금 지원 확대

세부추진사항	2026				2027				2028				2029				2030				2031이후			
	1	2	3	4	1	2	3	4	1	2	3	4	1	2	3	4	1	2	3	4	1	2	3	4
본예산 확보																								
세부계획 수립																								
사업 정산																								

(2) 특별교통수단(장애인콜택시) 법정대수 100% 확보

세부추진사항	2026				2027				2028				2029				2030				2031이후			
	1	2	3	4	1	2	3	4	1	2	3	4	1	2	3	4	1	2	3	4	1	2	3	4
계획 수립																								
차량 구입(신규,대폐)																								
운전원 충원																								

◎ 연도별투자계획

(1) 교통약자 대상 택시 요금 지원 확대

(단위:백만원)

구분	계		2026		2027		2028		2029		2030	
	계획액	집행액	계획액	집행액	계획액	집행액	계획액	집행액	계획액	집행액	계획액	집행액
계	8,400	0	0	0	2,100	0	2,100	0	2,100	0	2,100	0
국비	640	0	-	-	160	-	160	-	160	-	160	-
시비	192	0	-	-	48	-	48	-	48	-	48	-
군비	7,568	0	-	-	1,892	-	1,892	-	1,892	-	1,892	-
기타	0	0	-	-	-	-	-	-	-	-	-	-

※ 기타: 자부담, 민자 등/ 특교 및 소멸대응기금은 군비에 표시

(2) 특별교통수단(장애인콜택시) 법정대수 100% 확보

(단위:백만원)

구분	계		2026		2027		2028		2029		2030	
	계획액	집행액	계획액	집행액	계획액	집행액	계획액	집행액	계획액	집행액	계획액	집행액
계	812	0	0	0	278	0	218	0	158	0	158	0
국비	329.5	0	-	-	118	-	89.5	-	61	-	61	-
시비	34.2	0	-	-	22.8	-	11.4	-	-	-	-	-
군비	448.3	0	-	-	137.2	-	117.1	-	97	-	97	-
기타	0	0	-	-	-	-	-	-	-	-	-	-

※ 기타: 자부담, 민자 등/ 특교 및 소멸대응기금은 군비에 표시

◎ 공약달성 확인지표

(1) 교통약자 대상 택시 요금 지원 확대

확인지표	단위	목표	2026	2027	2028	2029	20300l후
사업 실시 여부	여부	실시	-	실시	실시	실시	실시

(2) 특별교통수단(장애인콜택시) 법정대수 100% 확보

확인지표	단위	목표	2026	2027	2028	2029	20300l후
법정대수확보	대	3	-	2	1	-	-

◎ 추진실적

(1) 교통약자 대상 택시 요금 지원 확대

· 어르신 1000원 택시 사업 검토 결과, 이동 수단 간 불균형과 예산 과다 소요 예상으로 대책안(현행 택시 요금 지원 금액 상향) 검토

◎ 문제점 및 대책

(1) 교통약자 대상 택시 요금 지원 확대

· 문제점

- 1,000원 택시 사업 예산 과다 소요 예상: 연 18,360백만원

※ 산출내역

(관외) 60,000원 × 월 4회 × 4,500명 × 12개월 = 12,960백만원

(관내) 10,000원 × 월 10회 × 4,500명 × 12개월 = 5,400백만원

- 어르신 1000원 택시 요금제 시행 시, 관외 이동(신안~목포) 이용객 집중 및 택시 부족 현상 발생 예상
- 대중교통(공영버스) 이용객 감소로 이동 수단 불균형

· 대 안: 현행 택시 요금 지원 사업(1004택시) 지원 금액 대폭 인상(30,000원 →80,000원)

(2) 특별교통수단(장애인콜택시) 법정대수 100% 확보

· 특별교통수단 14개 읍·면 1대씩 전진 배치

- 차량 구입, 거점 설치 및 운영비, 운전원 충원 인건비 등 고정비용 크게 증가

- 미연륙 도서지역 및 단일 읍·면 내 이동 수요는 제한적으로 우리군 특화된 대중교통 서비스 이용(확대)
- 법정 대수 확보 및 운전원 증원 이후 이용실적 추이를 보고 인근 도시와 거리가 먼 지역의 거점 설치 검토

◎ 기대효과

(1) 교통약자 대상 택시 요금 지원 확대

·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
· 농어촌 교통 사각지대 완벽 해소

(2) 특별교통수단(장애인콜택시) 법정대수 100% 확보

· 콜대기 시간 단축으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

◎ 관련사진(후보지 등 기타 정보자료)

특별교통수단 탑승